

■ 법원공무원규칙 [별표 6의7] <신설 2026. 2. 2.>

언어논리영역, 자료해석영역, 상황판단영역 및 헌법 과목을 대체하는
공직적격성평가의 종류
(제60조제1항 관련)

대상 시험	법원 행정고등고시의 제1차시험
과목	· 언어논리영역 · 자료해석영역 · 상황판단영역 · 헌법
대체하는 시험의 종류	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제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공직적격성평가(심화)

비고: 위 표에서 정한 공직적격성평가는 대상시험의 원서접수 연도에 실시되는 시험
으로 한정한다.